

조선시대 관사(官斜) 문기의 이중 발급 사례와 그 원인

1682년 무안현 결송입안을 중심으로

The Case of Double Issuance of Gwan-sa(官斜) Documents in the Joseon and Its Causes
: Focusing on the 1682 Gyeol'song Ib'an(決訟立案) of the Muanhyun Case

권이선*

국문요약 조선시대 관에서 발급된 입안(立案)은 일반 백문(白文)과 다르게 공증력이 높은 문서로 인식되었다. 따라서 당시 사람들은 입안 자체의 위상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으나, 간혹 입안의 발급 과정에 있어서는 사안에 따라 위조를 의심하기도 했다. 본 연구는 조선시대 노비 매매 이후 관에서 발급된 사급입안(斜給立案)이 위조로 의심된 과정과 그 원인, 그리고 관의 행정적 조치를 1682년 무안현에서 발생한 소송을 통해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 소송에서 원고와 피고 모두 방매자 손흥립에게서 비 끝문을 매득하여 매매 명문뿐만 아니라, 관에서 발급한 사급입안도 가지고 있었다. 같은 지역에서 같은 비를 두고 사급입안이 이중으로 발급된 것이다. 피고 측은 원고가 제출한 사급입안이 위조라고 주장하며, 그 근거로 관의 등록에 치부 기록이 없음을 들었다. 최종적으로 무안현은 원고가 제출한 1649년의 입지(立旨)에 근거하여 최종 판결을 내렸으며, 실제 관의 등록을 살펴본 결과, 상하 단락의 인적(印跡)이 달라 원고의 주장대로 끝문에 대한 기록이 할거되었다고 판단했다. 이처럼 조선시대에는 개인 간에 노비를 매매하고 관을 통해 사급입안을 발급받으면, 발급한 관에서 관련된 치부 기록을 작성하여 보관하였다. 이를 통해 추후 사급입안의 위조 여부를 확인할 수 있었다. 현재 사급입안 관련 등록류의 실물은 존재하지 않으나, 중기(重記)를 통해 관에서 보관된 사급입안 등록의 존재는 확인된다.

핵심어 사급입안의 위조, 관의 등록, 무안현 결송입안, 중기

- 차례**
- 머리말
 - 무안현 노비 소송의 과정과 이중 관사 문기의 쟁점
 - 관사 문기에 대한 민의 인식과 대응책
 - 맺음말

유무는 무엇보다 중요했다. 문제는 승소를 위해 종종 문서를 위조하는 경우가 있었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송정에 나온 원척(元隻)은 서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기 위해 상대방이 제출한 문서를 위조로 몰았다. 상대방 문서가 위조라면 기존 판결을 뒤집을 수 있거나 유리한 판결을 받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문서 위조에서 비롯된 분쟁의 유형을 분류하면, ①문기를 위조하여 소송에 이용하거나, ②위조된 문기가 발단이 되어 소송이 발생한 경우로 나눌 수 있다. 위조 방식은 남의 문서를 굵어 변조하거나, 남의 서압(署押)을 날조하여 베끼거나, 남의 성명을 바꾸고 교묘하게 둘러대어 문장을 꾸며 옳고 그름을 전도시키거나, 인장을 위조하고 주묵(朱墨)으로 농간질을 부리는 방식이었

1. 머리말

조선시대 소송은 “종문권시행(從文券施行)”이라 하여 구증(口證)인 구두 진술보다 서증(書證)인 문기를 중시했다. 그러므로 송정(訟庭)에 나온 원고와 피고에게 문기의

다.¹ 이러한 방식은 사인(私人) 간에 자신 혹은 타인이 가진 문기를 위조하거나 훔침으로써 이루어졌다. 그러나 이와 반대로, 관에서 발급하여 공증력을 인정받은 사급입안(斜給立案)이 위조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소송이 진행된 사례가 있었다. 바로 1682년(숙종 8) 무안현에서 결급해준 원고 김상현(金尙鉉)과 피고 전복립(全卜立) 및 순립(順立) 사이의 소송이다.²

이 소송에서 원고와 피고는 각자 손흥립이란 사람에게서 노비를 매득했고, 양측 모두는 사급입안을 발급받은 상태였다. 먼저 매득한 쪽은 원고 측이었고, 피고 측은 3년 뒤에 매득했다. 이후 소송이 발생하자 피고는 원고 측이 제출한 사급입안이 위조라고 주장했다. 그 근거로는 원고에게 사급입안을 발급해준 관에 관련 내용의 등록 치부 기록이 없다는 점이었다. 또한 손흥립이 방매할 때 구문기(舊文記) 즉, 본문기를 매득자에게 주지 않았으므로 분명 손흥립이 가지고 있는 본문기에 배탈(背頓)이 되어 있어야 하는데 배탈이 없었다는 것이다.

이 소송의 특이점은 3년 동안 한 지역 안에서 동일한 노비를 두고 매매가 이루어졌고, 같은 관에서 사급입안의 발급도 이루어졌다는 점이다. 문제의 사단은 손흥립이라는 인물의 중복방매에서 비롯된 것이었으나, 어느 한쪽의 사급입안에는 관에 치부 기록이 있고, 다른 한쪽에는 관에 기록이 없는 특이점이 있었다. 즉, 1682년에 무안현에서 발급된 결송입안은 어떻게 같은 비자(婢子)를 두고 매득과 소송이 가능했는지, 당시 매매 관습과 지방 관아의 문서 관리 실태를 엿볼 수 있는 자료이다.

현재까지 조선시대 매매 이후 공증 절차에 대한 연구는 주로 노비, 토지 등의 사급입안의 현존 수량과 발급 과정, 문서의 서지적 특징에 관한 연구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³ 이후 전라도 지역의 토지매매에서 구문기(舊文記)를

양도할 때 구문기에 방매하지 않는 토지 또는 가옥이 병록(併錄)되어 있는 경우에 구문기를 대각선 또는 수직방향으로 절반 나누어 양도하는 방식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었다.⁴ 이 연구는 구문기를 양도하지 못할 경우 직관적으로 나누어 가졌던 사례를 현전 문서를 통해 잘 보여주는데, 특정 시기와 지역에 국한된 연구여서 보편적인 사례로 보기에 어려운 부분이 있었다. 이외에도 분재문기에 수록된 배탈사급입안의 현황과 용례, 발급 목적과 시기를 살핀 연구가 있다.⁵ 이 연구는 배탈사급입안의 용례를 중심으로 발급 절차와 내용을 분석하여 배탈이 가장 많이 발견되는 문서가 분재문기이며, 본문기가 양도되지 않음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이중매매의 차단 효과를 기대하며 배탈사급입안이 발급되었음을 밝혔다. 그러나 아직까지 사급입안과 배탈사급입안의 공증력에 관한 실제 적용 양상 즉, 중복방매의 차단 효과가 실제로 있었는지에 대한 연구는 진행되지 못했다. 특히, 관에서 사급입안과 배탈사급입안을 발급할 때 신청자(또는 방매자)에게 증빙문서인 입안 또는 배탈사급입안만을 건네주었다는 절차 외에는 그 이후의 과정에 대한 연구가 부족했다. 관에서 개인에게 입안을 발급해준 뒤, 입안에 위조가 더해질 경우 이에 대해 진실을 가릴 수 있는 안전장치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거의 연구되지 않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1682년 무안군 결송입안을 중심으로, 조선시대 매매 이후 중복방매를 넘어 중복 사급입안의 발급까지 가능했던 요인과 공증 절차 이후 관에서 어떻게 행동했는지에 대해 파악하고자 한다.

1 『무명자집(無名子集)』 冊6, 상언(上言), 「가금(家禁)」.

2 「무안현 결송입안」,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청구기호: 구6716.

3 최연숙, 「조선시대 입안에 관한 연구」, 한국학중앙연구원 박사학위논문, 2005.

4 채현경, 「조선후기 토지매매의 구문기 양도방식에 대한 사례연구」, 『고문서연구』 38, 한국고문서학회, 2011.

5 문숙자, 「16~18세기 분재문기에 수록된 배탈사급입안의 내용과 성격」, 『고문서연구』 52, 한국고문서학회, 2018.

2. 무안현 노비 소송의 과정과 이중 관사 문기의 쟁점

2.1. 1~2차 소송과 소송 관계자들

1682년(숙종 8)에 무안현에서 판결이 내려진 본 소송의 원고는 나주에 거주하는 유학 김상현(金尙鉉)이며, 피고는 남평현에 거주하는 조군(曹軍) 전봉립(全奉立)과 전순립(全順立)이다. 1682년의 소송은 3차 소송으로, 이전에 이미 두 차례의 소송이 있었다. 먼저, 이 소송은 김상현의 아버지가 생전에 매득한 비(婢) 끝문[末叱文]의 도망에서 비롯되었다. 김상현의 아버지 김극정(金克楨)은 1626년(인조 4)에 무안에 거주하는 손흥립(孫興立)에게서 끝문을 매득하여 부렸으나, 1627년(인조 5)에 끝문이 남평현으로 도망갔다. 이후 김극정이 사망하였고, 이 시기에 김상현은 강보에 쌓인 어린아이라 끝문의 행적을 쫓을 수 없었다. 1차 소송은 1648년(인조 26)에 시작되었다. 세월이 흘러 성장한 김상현은 1648년에 끝문을 잡기 위해 피고가 거주하는 남평현에 소지를 올렸다. 그러나 끝문의 남편 전봉쇠는 자신이 아내 끝문을 매득했다고 주장하며 막아섰다. 이에 남평현의 현감은 양측의 문기를 취해 살펴본 결과, 김상현 측의 매매 문기는 1626년에 작성된 반면, 전봉쇠 측의 매매 문기는 1629년에 작성되어 김상현 측이 더 먼저라는 것을 확인했다. 따라서 남평현에서는 매매의 선후 시점을 기준으로 김상현에게 노비를 결급해주었다.⁶

1차 소송에서 패소한 전봉쇠는 1649년(인조 27)에 나주목에 소지를 올렸다. 2차 소송에서는 전봉쇠가 원고이고 김상현이 피고로, 전봉쇠가 피고의 거주지인 나주목에 소지를 올렸다. 나주목사는 매매의 선후를 따져 보았을 때

먼저 매득한 자가 주인이라고 판단했지만, 나주와 남평의 거리가 하루 여정에 불과할 정도로 가까운데, 김상현 측에서 한번도 사환하지도 않고 신공(身貢)을 받지 않은 점을 의심스러워하였다. 이에 전봉쇠의 주장을 따라 봉쇠 측에 게 노비를 결급해 주었다.⁷ 2차 소송에서 승소한 전봉쇠는 이때 나주목으로부터 결송입안도 발급받았다.

3차 소송은 32년 후인 1681년(숙종 7)에 김상현이 관찰사에 정소(呈訴)하면서 시작되었다. 김상현은 자신이 강보에 쌓인 어린아이일 때 어찌 오래전에 도망간 끝문에게서 신공을 받고 부릴 수 있겠냐며, 나주목의 송관이 근거 없는 전봉쇠의 말만 믿고 청리(聽理)하여 결절해 주었다고 관찰사에게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에 관찰사는 “매득에 이미 선후가 있으니 도망간 노비에게서 신공을 징수 받거나 부릴 수 없으면 안 되나, 결절(決折)하여 다시 명료하게 처리함으로써 원통함을 호소하는 폐단이 없게 할 것”이라며 처분을 내렸고, 시행처는 무안현(務安縣)으로 정해졌다. 이에 소송의 피고 전봉쇠를 불러들이기 위해 처분 결과가 남평현으로 이문(移文)되었으나, 봉쇠가 이미 사망하여 그의 아들 복립과 순립이 송정으로 나왔다.⁸ 이상의 과정을 정리하면 <표 1>과 같다.

<표 1> 1681년~1682년 소송 관련 관계자

구분	시기	장소	방매자/원고	매득자/피고	증인
매득	1626년	-	손흥립	김극정	-
	1629년	-	손흥립	전만희	-
1차 소송	1648년	남평현	김상현 (거주지 나주)	전봉쇠 (거주지 남평)	손신길 (거주지 무안)
2차 소송	1649년	나주목	전봉쇠 (거주지 남평)	김상현 (거주지 나주)	손신길 (거주지 무안)
3차 소송	1681~1682년	무안현	김상현 (거주지 나주)	전복립 및 전순립 (거주지 남평)	손우표 (거주지 무안)

6 …矣父亦 去丙寅年分 本州居孫興立處 婢末叱文 買得使喚爲如乎 末叱文亦 因爲逃走後 矣父身死爲白遣 矣身亦 直襁褓乙仍于 推蹤不得爲有如乎 去戊子年分 同末叱文推尋次 呈狀于南平官推捉 則其夫全奉金言內 其矣妻末叱文之買得是如爲去乙 縣監教是 兩邊文記取納相考…記段 丙寅年買得爲白遣 全奉金段 其…買得是乎等以 縣監教是 先後分揀…(給)爲有如乎…

7 …己丑年 全奉(金)呈…則牧使教是 行下內 以先後言之則丙寅買得者爲主是乎矣 大概自羅州距南平 不過一日程 而一不使喚 一不收貢 事極可疑是如 一從全奉金之言決給於奉金爲有臥乎所 極爲冤枉爲遣…

8 …大抵奉金言內 一不收貢 一不使喚是如爲良置 末叱文逃走之後 矣父身死矣 矣身亦 在襁褓爲有去等 久遠逃亡婢子乙 何所隨而收貢使喚 而訟官教是 無據之說 信聽決折爲有置 明政之下 如此叛主婢子乙 依律正罪 明(決)官良中 各別背關行下爲只爲 議送及所志是置有亦 同訟隻全奉金 移文南平縣爲有如乎 奉金段 身死是如 其子卜立順立等 捉來爲有去乙…

본격적으로 3차 무안현 소송 과정을 살펴보기 전에, 소송에 등장하는 주요 관계자들에 대해 먼저 검토하고자 한다. 이는 이 소송이 오래된 분쟁이었기 때문에 처음 끝문을 매듭한 자와 1648년, 1649년, 1681년의 소송 관계자들이 각기 달라서다. 따라서 소송에서 언급되는 주요 인물들의 내력을 검토함으로써 일차적으로 이들의 관계성을 파악하고, 이차적으로 그들 진술의 진실성 여부를 검토하고자 한다.

먼저, 1차에서 3차 소송까지 주요 증인이자 사건의 핵심 관계자는 손홍립과 그의 자손들이다. 손홍립은 김극정과 전만희에게 끝문을 중복방매한 인물이다. 손홍립은 본인뿐만 아니라 아버지 응지(應智), 동생 영립(榮立)이 모두 선무원종공신으로⁹ 이 집안은 무인 집안이었다. 손홍립의 생년은 미상이나 밀양손씨의 족보에 따르면 1647년(인조 25)에 사망했다. 따라서 1648년의 1차 소송에서 손홍립의 아들 손신길(孫信吉)이 증인으로 송정에 나왔다. 손신길은 1605년(선조 38)에 태어나 1663년(현종 4)에 사망했다. 그래서 3차 소송에 손신길의 아들 손우표(孫遇杓)가 증인으로 출두했다. 손우표는 1626년(인조 4)에 태어났으므로, 조부 손홍립이 김극정에게 계쟁비를 팔았던 해에 태어났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손우표가 조부 대의 방매 내력에 대해서 구체적인 증언을 하는 것은 어려웠으나, 3차 소송 당시 아버지가 사망했기 때문에, 손우표는 자신이 조부의 매매에 대해서 들은 바를 증언하며 관련 문기를 제출했다.

김상현의 집안에서 검토할 인물은 김운해(金運海), 김극정, 김상현이다. 김운해는 김상현의 조부로 무안현 결송입안에서 ‘김 동지(金同知)’로 등장하며, 손신길의 진술에서 관작이 높고 세력이 있어 자신의 아버지 손홍립에게 도망한 노비를 추심해 주겠다고 꾀어낸 인물로 언급된다. 실제 김운해는 1608년(광해군 1년) 무과 별시에서 을과 6위로 급제했으며, 동지중추부사와 김해부사 등을 역

임했다.¹⁰ 결송입안에서 ‘동지’로 불리는 것은 김운해가 지낸 동지중추부사에서 유래한 것으로 보인다. 김운해에게는 김극정, 김극표(金克杓), 김극희(金克檜), 김극주(金克柱)의 네 아들이 있었다. 이중 김극정이 무안현 결송입안에 등장하는 김상현의 아버지이다. 김극정은 1607년(선조 40)에 태어나 1634년(인조 12)에 불과 28세의 나이로 사망했다.¹¹ 그래서 김극정은 비 끝문을 매듭한 당사자임에도 불구하고 소송에 등장하지 않는다. 마지막으로 김상현은 1628년(인조 6)에 태어나 1693년(숙종 19)에 사망했으므로 21세 때와 54~55세 무렵에 소송을 겪었다.¹² 소송에서 김상현은 끝문이 도망갔고, 이후 아버지가 사망했을 때 자신은 강보에 쌓인 어린아이였기 때문에 끝문을 추심(推尋)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끝문이 도망간 해가 1627년(인조 5)으로, 이때 김상현은 2살, 아버지가 사망한 1634년에는 7세였으므로 그의 주장은 타당성이 있었다.

전봉쇠와 전복립·순립의 집안은 족보나 연대기 사료에서 삶의 흔적을 찾기 어렵다. 다만, 무안현 결송입안에서 전씨 집안이 제출한 금성현 결입안(決立案)과 진술을 통해 이들이 양역(良役)을 족음이 확인된다.¹³ 즉, 아버지 전씨 쪽은 양인이며 복립과 순립의 어머니인 끝문이 김상현 집안의 사비(私婢) 출신이었다는 점이 드러난다. 무안현 결송입안에 따르면 전봉쇠와 끝문이 혼인한 후 자녀를 낳았으며, 1629년 봉쇠의 아버지 전만희(全萬希)가 손홍립에게서 끝문과 봉쇠 사이의 후소생인 봉화(奉化), 봉비(奉

10 「홍패(紅牌)」,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청구기호: 구6706; 『승정원일기』 93책, 인조 24년 4월 5일(신사); 『약재집(約齋集)』 冊5 「同知金公墓碣銘」.

11 『광산김씨』 족보에 따르면 김극정은 1634년(인조 12) 2월 19일에 사망했다.

12 무안현 결송입안에서 김상현의 나이는 45세로 기재되나(元告金尙鉉年四十五) 족보 및 행적 등을 고려하면 54세의 오기로 추정된다.

13 복립과 순립 형제의 아버지 전봉쇠의 직역은 양역인 조군(曹軍)이었다(…順治六年三月十八日 錦城縣決立案內 右立案爲決給事 節到付南平居曹軍全奉金名呈使議送內…). 또한 이들 형제도 조군으로 역이 정해져 연달아 2대가 양역을 족을뿐 아니라 이들의 누이인 봉화의 자손도 정병 또는 경포수를 지내며 많은 자손이 양역을 지고 있었다(…矣等曹軍定役 連二代良役爲白有於 矣妹是去 奉花子孫 或定正兵 或定京砲手 數多子孫良役爲白去等…).

9 『선무원종공신록권』,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소장, 청구기호: 古4651-13.

霏) 등을 매득했다. 실제로 1681년(숙종 7) 소송에서 전복립은 48세, 순립은 45세였으므로 각기 1634년생(인조 12), 1637년생(인조 15) 생이다. 이들 형제가 어머니의 속량(贖良) 이후에 태어났다면, 양인이라는 주장은 타당하다. 두 형제 외에도 연상의 여성 동기가 있었으나, 전봉쇠가 이미 사망했기 때문에 마지막 3차 소송에서는 아들 둘이 송정에 나왔다.

이 소송에서 중요한 인물로 심기원(沈器遠)이 있다. 심기원은 김상현의 진술에서 ‘심기원’ 또는 ‘심적(沈賊)’으로 언급된다. 이는 심기원이 1644년(인조 22)에 회은군(懷恩君)을 추대하며 반란을 꾀했다는 밀고로 인해 역적으로 몰려 죽었기 때문이다. 1644년의 심기원 몰락은 김상현의 성장과 맞물려 소송을 촉발한 계기로 추정된다. 본래 심기원은 인조반정의 주역으로 정사공신 1등에 책록되었고 이괄의 난을 진압하기도 했다. 권세가 있었던 심기원은 병자호란 때 도원수였으나 남한산성에 포위된 인조를 구제하지 못한 죄로 잠시 먼 지방으로 유배를 갔다.¹⁴ 그러나 곧 다시 복귀하는데, 김상현은 잠시 유배를 와 있었던 심기원이 자신 집안의 비를 거집(據執)하면서 사건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심기원의 유배지는 연대기사료에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지만, 『목민심서』를 통해 짐작할 수 있다. 이후원(李厚源)이 광주목사(光州牧使)로 재임 중일 때 심기원이 대관(大官)으로서 이웃 고을에 귀양을 와 있으면서 고을 사람들을 위협하여 노비로 삼았다는 기록이 있다.¹⁵ 이후원은 1637년(인조 15) 6월에 광주목사를 제수 받아 1638년(인조 16) 9월 중에도 광주목사에 재임하고 있었다. 이로 미루어 심기원이 전라도로 유배 왔음을 유추할 수 있다. 무안현 결송입안에 따르면, 심기원은 무인년 즉, 1638년에 나주목으로 유배 왔다. 이는 『목민심서』와 시기가 일치하며, 심기원이 지방에서

타인의 노비를 거집한 공통된 행적도 확인된다.

무안현 소송에서 김상현에게 불리하게 작용한 점은 끝문을 매득한 후 사급입안을 발급받았으나, 관에 관련 치부 기록이 없다는 점이다. 이에 대해서 김상현은 심기원을 원인으로 지목했다. 자신의 집안에서 비 득례(得禮)와 끝문을 매득했으나, 심기원이 유배 와 있을 때 득례의 주인이 심기원에게 부탁해 심기원이 득례를 빼앗아 갔고, 이때 관에 있었던 등록의 기록도 할거(割去)해 갔다고 주장했다.¹⁶ 김상현의 입장에서 인조반정을 성공시킨 공신 심기원의 부당한 행동을 밝히기란 쉽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심기원의 몰락 이후, 김상현은 심기원의 부당한 행동을 밝혀 그와 관련된 비를 추심하는 데 적극적으로 행동할 수 있었을 것이다. 이러한 연장선 위에서 1681~1682년 소송에서도 심기원의 부당한 행동을 구체적으로 밝힐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상 무안현 소송과 관계된 이들에 대해 살펴보았다. 무안현 소송의 특징은 매득자들이 생전에 분쟁을 일으키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 소송은 매득자들의 사후에 후손들 간에 비 소유권을 두고 발생하였다. 이 소송의 결과에 따라 끝문의 자손들은 양인이 될 수도, 또는 천인이 될 수도 있었다. 마지막 3차 소송의 쟁점은 다음 2절에서 살펴보겠다.

2.2. 3차 소송의 과정과 쟁점

무안현에서 발생한 3차 소송의 과정을 시간 순대로 정리하면 <표 2>와 같다.

14 『인조실록』 34권, 인조 15년 2월 15일(을유); 『승정원일기』 56책, 인조 15년 2월 19일(기축); 인조 15년 10월 5일(기해).

15 『목민심서(牧民心書)』 「형전(刑典)」 6조 제5조 금포(禁暴).

16 …己丑三月初三日金尙鉉名呈錦城縣所志內 婢得禮及今訟末叱文等乙 矣父亦 丙寅年分 孫興立處 買得之時 同婢二口乙 一張成文爲有等以 字破同兩婢乙 亦爲一張立案爲有有乎 去戊寅年分 逆賊沈器遠謫 居本縣時 婢得禮族人所囑 沈賊亦 其矣婢是如 公然據奪 字破後 具推尋之弊是可向入 削出得禮立案等之說 其時時暫聞爲有矣 矣身以年少兒童 不知妙理 不出立案等爲有有乎 大概沈賊削出得禮謄錄 則一張中末叱文名錄 亦爲從割爲有置….

〈표 2〉 1681~1682년 무안현 소송의 과정

날짜	소송 과정
[1681년 11월]	▶ 김상현의 소지
[1681년 11월]	▶ 관찰사 처분 - 무안현에서 소송을 시행할 것을 명령
[1681년 11월]	▶ 남평현 이문 - 전봉쇠가 죽어 그의 아들 복립과 순립을 잡아옴
1681년 11월 26일	▶ 시송다짐 - 원고 김상현, 피고 전복립과 순립
1682년 1월 3일	▶ 무안현에서 원고 김상현 추문
	▶ 무안현에서 피고 전복립과 순립 추문
	▶ 원고와 피고 증거 문기 제출
1682년 1월 14일	▶ 무안현에서 원고 김상현 추문
	▶ 무안현에서 피고 전복립과 순립 추문
1682년 1월 19일	▶ 무안현에서 손홍립의 손자 손우표 추열
	▶ 원고 김상현과 피고 전복립 및 순립 결송다짐
[미상]	▶ 무안현의 판결 → 관찰사 회이
[미상]	▶ 관찰사 회송
1682년 2월 4일	▶ 회송에 의거한 무안현의 처분 - 손우표, 전복립과 순립에게 형추를 가함
	▶ 무안현에서 손우표 추문
[미상]	▶ 무안현 추문 결과를 관찰사에게 첩보
[미상]	▶ 관찰사의 첩보 회송
[미상]	▶ 관찰사 무안현에 관문 발송
[미상]	▶ 관문에 의거하여 무안현에서 소송 문기 전준
[미상]	▶ 서목 회송
[미상]	▶ 서목 회송에 의거하여 무안현에서 결급
1682년 5월	▶ 무안현 결송입안 발급

1681년(숙종7) 11월 26일에 원고 김상현(당시 54세), 피고 전복립(당시 48세)과 순립(당시 45세)은 시송다짐(始訟拷音)을 했다. 이들은 아무런 이유 없이 송정(訟庭)에 30일이 넘도록 나오지 않으면 대전(大典)에 의거하여 시행해 줄 것을 아뢰었다.¹⁷ 이는 친착결절법(親着決折法)으로, 원고와 피고 중 어느 한쪽이 30일이 넘도록 소송에 불참하면 꾸준히 송정에 나왔던 쪽이 승소 판결을 받겠다는 규정이었다. 본격적인 소송은 시송다짐을 하고도 지연되어 한 달이 넘은 1682년(숙종 8) 1월 초3일에 무안현에서 원고 김

상현을 추문하며 시작됐다.

김상현의 입장은 ① 그의 아버지가 1626년에 비 끝문을 매득했고, ② 1627년에 끝문이 도망갔고, 그 이후 아버지가 예기치 않게 일찍 사망했으며, ③ 자신은 어린 시절 외가에서 자랐으며, ④ 1648년에 비 끝문이 남평에 있을 때 남평현에 정장(呈狀)하여 붙잡으려 했다는 것이다. 그런데 끝문의 남편 봉쇠가 자신이 끝문을 매득하고, 1629년에 속량(贖良)했다고 주장하며 방해했다는 것이다.¹⁸ 김상현은 자신이 성장한 뒤에 끝문을 붙잡으려 했지만, 이미 주인을 배반한 노비가 순순히 상전에게 돌아가지 않았으며, 신공을 바치며 양역(仰役)할 리 없다고 주장했다.¹⁹ 또한 김상현은 2차 소송의 송관인 나주목사 김효성(金孝誠)이²⁰ 주인을 배반한 끝문의 죄를 다스리지 않고, 봉쇠의 말만 듣고 봉쇠에게 결급해 주었다며 원통함을 호소했다.²¹

김상현에게 이 사건의 가장 큰 문제는 손홍립의 중복 방매였다. 손홍립은 자필로 김상현의 아버지와 전봉쇠 각각에게 끝문을 방매한 것이 분명했다. 양측 모두 관의 사급입안을 발급받았기 때문에,²² 김상현은 손홍립이 자신의 아버지에게 끝문을 판 후, 다시 끝문의 남편과 모의하여 끝문을 남편에게 속량했을 것으로 판단했다.²³ 김상현은 비 끝문이 주인을 배반한 죄와 손홍립의 중복방매 죄를

18 …壬戌正月初三日 元告幼學金尙鉉更推白等 矣父亦 丙寅年則本州居孫興立處 婢末叱文買得使喚爲有乎 末叱文亦 因爲逃走之後 矣父不意身死是遣 矣身亦在襁褓 見育於外家 而家運艱散 明于逃避 婢無意推問是如乎 戊子分年 同婢末叱文隱直南平是如爲去乙 呈狀南平推捉 則末叱文奉金稱名人 末(叱)文乙 買得贖良是如言說爲去乙…

19 …大概奉金言內 一不使喚 一不收貢是如爲良置 末叱文 丁卯年逃走之後 矣父身死 矣身亦在 襁褓爲有去等 逃隱叛主婢子乙 何所從而收貢使喚于其時 矣身雖或成長而有推捉之舉 叛主奴婢 萬無順從 上典之推捉而收貢仰役之理是去等…

20 『승정원일기』 103책, 인조 26년 12월 6일(병신).

21 …己丑年奉金亦 呈狀起訟於本州 則牧使金等教是 行下內 以先後言之則 丙寅買得者爲主 己巳買得者爲奴是乎矣 自羅州距南平 不過一息之程 一不使喚 一不收貢事 極可疑是如 一從叛奴之言 既給於奉金爲有臥所 誠極冤痛是白齊…

22 …同縣縣監教是 兩邊文記乙 取納相考 則矣父納末叱文買得在於丙寅年是遣 奉金段 末叱文贖良在於己巳年 而彼此文記本主孫興立自筆放賣 經官斜出而明白是乎等以 先後分據 矣身處 明名決給爲有如何…

23 …矣身時乍襁褓之中乎 所謂不得收貢使喚 勢所固然是去乙 訟官教是 不治叛主之罪 偏聽奉金奸巧之言 給決於奉金 豈不冤痛者哉…

17 …推閱次 辛酉十一月廿六日 元告金尙鉉年四十五 隻全卜立年四十八順立年四十五白等 必戶口的 矣徒等 奴婢相訟事 當日始訟爲去乎 元隻中 無故不就訟 而滿三十日是去等 依大典施行教味白齊…

짚으며 이들을 다스려 줄 것을 요청했다.²⁴ 이 사건은 단순히 끝문에 대한 소유권을 다툰 것만이 아니라, 주인을 배반한 강상죄와 관련된 법적 쟁점도 포함되어 있었다.

같은 날 피고 전복립과 순립의 주문도 이어졌다. 이들의 입장은 ① 1629년에 어머니 끝문과 아버지 봉쇠가 혼인했기 때문에 조부 만희(萬希)가 손흥립에게 끝문을 매득하여 속량했고, ② 1649년에 김상현이 자신의 조부 김동지(金同知=金運海)가 손흥립에게서 끝문을 매득했다며 나주목에 소송을 제기했고, ③ 이때 김상현은 이치가 끌려 물러났으며, 자신의 아버지 봉쇠가 승소했다는 것이다.²⁵ 김상현이 제출한 매득문기를 통해 끝문을 처음 매득한 이는 그의 아버지 김극정이 분명하다. 다만 여기서 피고 측이 김상현의 조부 김운해를 끌어들이는 것은 피고들이 어릴 때 2차 소송이 있었기에 전후 사정을 명확히 인지하기 어려웠거나, 김운해가 무관 벼슬을 지낸 세력가였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 측은 김운해가 세력가였기 때문에 분쟁이 발생했다고 생각했다. 이는 손흥립의 아들 손신길(孫信吉)이 증언한 초사(招辭)에서 확인된다.

손신길의 증언에 따르면, 자신의 아버지는 끝문의 후소생을 아울러 모두 만희에게 방매했다. 그 당시 김운해는 벼슬이 있어 광주목사와도 서로 잘 아는 사이였기 때문에 손흥립에게 광주로 도망간 손흥립의 도망노비 22구를 추심해 주겠다고 했다. 그래서 손흥립이 값을 받지 않은 채 우선 김운해에게 백문(白文)을 작성해 주었다고 한다. 이는 주인을 배반한 도망노비를 김운해가 추급해 주면 이후에 도망노비에 대해 주겠다는 둘만의 약조였다. 그런데 김운해가 끝내 손흥립의 도망노비를 추급해 오지

못했다. 그러므로 손흥립이 진작에 임시로 작성된 문서를 도로 가져왔어야 했으나 일생을 술에 빠져 살았고 김운해와는 한 마을에서 함께 거주하며 두터운 사이라서 시간을 질질 끌며 추급하지 않았다고 한다. 손신길은 김운해도 살아생전에 별도의 말이 없었는데, 운해가 죽은 뒤에 운해의 손자 상현이 임시로 작성된 문서를 가지고 빙자하여 요행을 바라며 이치에 맞지 않게 횡침(橫侵)한다고 진술했다. 즉, 손흥립, 김운해, 전만희가 모두 죽은 후에 김상현이 하리(下吏)와 공모하여 예전에 매득했던 모양으로 문서를 꾸며 관으로부터 사급입안을 발급받았다는 것이다. 특히, 손신길은 노비를 매득한 본문기에 배탈(背頤)을 하고, 등록(騰錄)을 해야 주인이 되는데 김상현은 원래의 본문기에 배탈하지 않았고, 또 관의 등록에 치부한 일도 없으니 여기에서 하리에게 몰래 받은 흔적이 분명하여 의심할 것이 없다고 초사를 바쳤다.²⁶

피고들만 김운해가 권세가라고 여긴 것은 아니었다. 2차 소송의 송관인 나주목사 김효성(金孝誠)은 김운해가 품계가 높은 무인으로, 세력이 있는 양반이라 할 만하고, 30리 거리에는 도망 노비가 거주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20여 년 동안 이를 잡아가 사환하지도, 신공을 거두지도 않고 상놈의 집안에 빼앗겼는지 의문을 가졌다. 무엇보다, 오래도록 내버려 두었다가 전만희와 손흥립이 사망한 뒤 추심하는 김상현의 행위가 이치에 맞지 않다고 생각했다.²⁷ 이렇듯 원고와 피고의 거주지가 가까운 것은 의구

24 …大概孫興立末叱文捧價放賣於矣父之後 與末叱文之夫奉金同謀 四年之後 更爲贖良 放賣於奉金 固令叛主 而孫興立重複放賣之罪 奉金奸巧叛主之狀 明若觀火 昭不可掩是置 家之叛奴 國之亂賊 其罪罔赦 同婢末叱文乙從公處決 以定叛主之罪教味白齊….

25 …同日隻全卜立順立等 更推白等 所訟原情段 矣母末叱文乙 本以羅州居孫興立婢子是如乎 己巳年分 矣祖父萬希生時 矣母末叱文乙 矣父奉金媛嫁乙仍于 興立處 買得贖良居生爲白去乙 己丑年分 羅州居金尙鉉亦 矣母末叱文乙 其祖父金同知生時亦 爲買得於孫興立處是如 羅州牧相訟 金尙鉉段 理屈退出 矣父處 決給爲白在果….

26 …其時訟官主敎是 兼有可疑之端 興立處推問次以推捉 則興立段 既已身死是如 其子信吉來現招內 父生時末叱文後所生並以 令萬希處 放賣是遣金尙鉉段 其祖父運海有職敢官 適仍其時則光州牧使 果相知之間 父邊叛奴婢二十二口 光州地居生 不得推治 常時憤慨之際 同運海以段 勢推給云云爲白去乙 父亦自知僥幸 不捧價本 白文姑爲成給爲白乎矣 同叛奴婢推給後 實成文記斜出以給之意 金石牢約爲有如乎 金運海亦 同奴婢乙 終無推給則假成文記 所當趁即還推事良中 父亦一生酒宴叱分不喻 與運海同居一里 相厚之間 迂延未推 事情如此之故 運海生時段 別無如此之言是如乎 運海身死後 其孫尙鉉亦 憑此假成文跡 僥倖希望 非理橫侵叱分不喻 矣父及運海·萬希等 具沒之後 尙鉉亦 下吏附同買得樣以 至於官斜出爲有臥乎所 奴婢買得本文記 背頤騰錄爲主是去乙 金尙鉉段 元無本文記背頤 又無騰錄置簿之事 必是下吏暗受之迹 明白無疑是如納招….

27 …則其時訟官主 行下內 金運海秩高武弁 出入邊將守令 可謂豪勢兩班是去等 同婢果爲丙寅給價買得 則居在一息之程奴婢 至今二十餘年之間 初

심을 불러일으키는 중요한 쟁점 중 하나였다. 피고들 역시 자신들이 20년 동안 군역에 보충됐으며, 모자(母子)가 연달아 2대 양역(良役)을 졌음에도 불구하고, 가까운 곳에 있었던 원고 측에서 자신들에게 그들의 노비라는 말을 하지 않았다고 아뢰었다. 정말 김상현의 조부가 값을 주고 매매했다면 2차 소송에 패소하고 34년이 지나도록 아무 상관 없는 사람처럼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피고들은 원고 김상현이 이렇게 이치에 맞지 않게 행동하는 이유가 손흥립의 아들 손신길도 사망했기 때문이라고 보았다. 김상현의 조부가 끝문을 매득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손신길이었기 때문이다. 피고 전복립은 이전 손신길의 초사에 근거하여 나주목의 등록을 상고하여 회이(回移)할 일로 이문을 작성해 보내 줄 것, 본래 주인이었던 손흥립이 본문기를 배탈한 분명한 이유를 살펴줄 것, 자신이 제출한 나주목의 득결 질문[作文] 곧 나주목 결송 입안을 상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²⁸

원고 김상현과 피고 전복립·순립의 진술이 끝난 뒤, 이들은 각자 끝문과 관련된 문기를 관에 제출했다. 원고가 제출한 문기는 ① 1626년 5월에 직장 손흥립이 유학 김극정에게 방대한 명문, 이 명문과 점련된 ② 1626년 6월에 나주목에서 발급한 사급입안, ③ 1649년 3월에 김상현이 금성현(=나주목)에 올려 받은 입지(立旨)였다. ③의 입지는 곧 심기원이 비 득례의 등록 기록을 할거하면서 끝문의 기록도 함께 할거해 갔음을 관에서 증명해 준 문서였다. 김상현이 등록의 상하 2장을 살펴보니 인적(印跡)이 서로 어긋나 있었다. 뒷장에는 끝문에 대해 사출 받

은 날의 매매와 입안이 절대 없고, 아랫장의 상단에는 타인의 매매와 입안 등에 대한 일만 기록되어 있어, 어디에도 절대 사출 받은 연월이 없었다. 즉, 김상현의 입장에서 끝문을 사출 받은 실물 사급입안이 존재하지만, 관의 등록에만 기록이 없는 이유는 심기원이 등록을 삭출해 갔기 때문이었다.²⁹

피고 전복립·순립이 관에 제출한 문기는 ① 1629년 4월에 직장 손흥립이 전만희에게 방대한 명문, 이 명문과 점련된 ② 1629년 4월에 나주목에서 발급한 사급입안, ③ 1649년 금성현(=나주목) 결입안(決立案)이었다. ③은 2차 소송의 송관이 발급해준 문서로, 송관은 4년 안에 한 현에서 관의 사출이 가능했던 이유로 손흥립의 중복방매를 짚었다. 따라서 매매의 선후로 따르자면 먼저 매득한 김상현 집안이 승소해야 하지만 몇 가지 문제점이 있었다. 끝문의 거주처와 김상현 집안의 거주처는 30리 정도 떨어져 있어 가까운데, 매득 후 1649년까지 24년 동안 한 번도 붙잡아 오지도, 신공을 받지도 않았다. 당시 송관은 이를 값을 주지 않고 멋대로 취했기 때문으로 보았다. 우선 버려두고 오래되기를 기다렸다가 앉아서 얻고자 한 계책으로 본 것이다. 따라서 매득의 선후로 판결을 내리지 않고 주인과 객으로 논하여 끝문을 전봉쇠에게 결급해 주었다.³⁰

29 …同日元告幼學金尙鉉 隻全卜立·順立等 更推白等 所訟奴婢付文記現納相考教是臥乎在亦 元告金尙鉉銘 天啓丙寅五月廿五日 證人鄭仁緯 婢主自筆直長孫興立各着名 幼學金尙鉉前明文內…明文粘付財證筆各人等招辭據 天啓六年閏六月十五日羅州牧斜出立案是齊 己丑三月初三日金尙鉉名呈錦城縣所志內 婢得禮及今訟末叱文等乙 矣父亦 丙寅年分 孫興立處買得之時 同婢二口乙 一張成文爲有等以 字破同兩婢乙 亦爲一張立案爲有 有去戊寅年分 逆賊沈器遠謫 居本縣時 婢得禮族人所屬沈賊亦 其矣婢是如 公然據奪 字破後 具推尋之弊是可向入 削出得禮立案等之說 其時時暫聞爲乎矣 矣身以年少兒童 不知妙理 不出立案等爲有 有 大概沈賊削出得禮謄錄 則一張中末叱文名錄 亦爲從割爲有置 今始相考則 兩張間印迹相違 得割分明爲於 又上張末叱文名 斜出年月買賣及立案之事則 節而無有是違 下張上端 又他人俱有買賣及立案等之事 而節無斜出年月 則此必是沈賊削去之處 顯著分明爲有置 後考立旨成給 俾無冤悶之弊爲只爲題辭內 昨以汝矣所訟之言 不以爲然 今此相考則兩張間印迹相違 刀割分明 沈賊割去事之顯著無疑仍于 後考次以立旨成給事 所志題辭是齊…

30 …隻全卜立·順立等現納段 崇禎二年己巳四月十五日證保南元柱 證人正兵金海生 婢主自筆直長孫興立各着名 南平居全萬希處明文內…粘付財證筆各人等招辭據 崇禎二年四月日 羅州牧斜出立案是齊 順治六年三月十八日錦城縣 決立案內…其買賣年歲先後言之 丙寅買得者當勝 己巳買得者當

無捉去使喚 又無收貢之事 公然見奪於常漢之家爲有臥乎所 萬萬無理 必是不爲買得 給價橫侵之故 姑爲棄置 以待年久 金孫兩人相死避之後 推得生意 明若觀火 事極無理是如…

28 …其後所生矣等兄弟 廿年充定 母子連二代良役對答爲白良置 居在近地 更無奴婢之言是乎於 實爲給價買得後 則己丑落訟 已至三十四年之久 勿問尋常度日 如視楚越 此不過信吉生時段 更不敢非理生意爲白如可 坐待信吉身死之後 提起非理 僥倖萬一得理之計 自就壓良爲賤之律爲白臥乎所爲先羅州牧謄錄 相考回移事 移文成送爲乎於 本主孫興立本文記背頃的實之由 鑑當是乎於 矣身現納 己丑年羅州得決作文 一相考 彼此文記明正處決 曲者懲治 以杜非理好訟之習教味白齊…

이렇게 원고와 피고의 문기 제출이 끝난 뒤, 다시 무안현에서 원고 김상현에 대한 추문이 이어졌다. 1682년 1월 14일에 무안현에서 김상현을 추문하자 김상현은 피고 측에서 주장하는 자신의 사급입안 위조에 대해 억울함을 호소했다. 심기원과 비 득례의 모의가 있는 후에 추심하고자 했지만 심기원이 죽어 끝내 출급 받지 못했고, 이때 심기원이 득례가 기록된 등록을 삭출하여 갔다고 들었으나 자신은 어려서 상황을 파악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³¹ 이후 2차 소송이 있을 때에 비로소 상고해보니 과연 자신이 들은 대로 득례를 삭출해 가면서 한 장 안에 같이 기록된 끝문도 함께 삭출됐음을 확인됐고 이에 관해 입지(立旨)도 받았다고 진술했다. 김상현은 일전의 소송에서 나온 손신길의 주장은 아버지의 중복방매 죄를 가리려는 간사한 계책으로 보았다. 그 증거로 당초 자신의 조부가 손홍립에게 그의 도망 노비를 추심해 줄 것을 약속했다면 관련 불망기가 있어야 했다. 그러나 손신길은 처음부터 불망기가 없었다고 아뢰었다. 김상현은 노와 주인이 서로 소송하는 일은 강상에 관계되므로 송관께서 옳고 그름을 상세히 조사하여 밝게 판결해 주고 순립 등 주인을 배반한 이들은 흉악의 죄로 다스려 줄 것을 요청했다.³²

같은 날 피고에 대한 추문도 이어졌다. 피고들은 자신들이 후대에 태어나서 오래 전 조부가 살아 있을 때의 일은 자세히 알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무안현에서는 본래 주인의 손자인 나주에 사는 손우표(孫遇杓)를 이문(移文)하여 잡아 와서 추열하였다. 조부 손홍립과 부 손신길이 사망한 상태였기에 손우표가 자손으로서 송정에 나왔다. 무안현의 송관은 1682년 1월 19일에 손우표(당시 57세)에게 “네 조부가 김극정과 전봉쇠 각자에게 비 끝문을 방매했고, 양측 모두 경관(經官)을 하여 사출까지 받았는데, 순립의 조사에 따라 끝문이 기재된 본문기를 상고해보니 끝문을 배탈한 곳에 칼로 베어낸 뒤에 다른 종이를 붙여 고치고 연달아 행을 추가로 쓴 흔적이 분명히 보인다.”면서 이에 대한 사연을 그대로 고하라고 추문했다.³³

손우표는 김극정과 전봉쇠에게 방매된 문기를 살펴보니 자신의 조부 필적이 분명하나 본문기의 배탈 부분에 칼로 베어내고 뒷면에 다른 종이를 부친 부분, 글자 행을 연달아 추가로 쓴 흔적이 있는 것은 자신이 뒤늦게 태어난 사람이라서 이유를 알지 못하겠다고 진술했다. 또한 방매의 선후에 대해서도 실제 누가 매득했는지 옳고 그름을 알기 어렵다고 말했다.³⁴ 손우표의 진술을 마지막으로 같은 날에 원고와 피고는 노비 화명(花名)을 헌납하고 관식(官式)에 의거하여 처벌해 줄 것을 요청하는 결송다짐(決訟條

負是在果 但其間有數曲折 而金運海秩高武弁 出入邊將守令 可謂豪勢兩班也 果爲給價買得婢子 則所買婢子居在一息之程 自丙寅至今二十四年之間 何不推捉而徵貢乎 況於金運海下來本土 已有年歲 身死於上年 則買得婢子乙 見奪於常漢之家 而一不呈官推捉 此甚可疑叱分不喻 一時買得爲在 得禮段 捉來使喚爲乎矣 至於末叱文段 既不捉來 又不徵貢 則獨於末叱文 一何便護耶 此必不爲給價 橫得之故 姑爲棄置 以待年久 坐得之計者也 果爲給價買得 而所買之婢 終不得推捉 則所給之價 例當還推是去乙 金孫兩人 同居一步 曾無一言爲有可如 相繼死亡之後 至於尙鉉 今始推尋 其不給價斷可見矣…

31 …壬戌正月十四日元告金尙鉉更推白等 叛奴言內 矣身所納文記 暗出官斜故無謄錄是如爲臥乎所 極爲無理事段 當初婢末叱文買得之時 婢得禮乙亦爲買得是乎等以此兩婢乙 並只一張成文官斜使喚爲如乎 戊寅年大逆沈器遠謫居本州時 婢得禮族人所囑 故沈賊其矣婢是如公然據奪 而後具推尋之弊是可向入 同得禮買得文記乙 一向推尋爲乎矣 以死爲限 終不出給爲有如乎 其時得禮謄錄削出之說 雖有得聞 矣身以年弱兒童 以不知事理 不出立旨爲有如乎…

32 …己丑年相訟時 始爲相考 則果如前所聞是乎等以 呈官受立旨之時 訟官金等教是 不以此爲咎 立旨欲給爲白齊…本主則孫興立 己身死爲有等以其子信吉招內…信吉欲掩其父興立重復放賣之罪 極其奸巧是去乙 矣身告于訟官 前自信吉之言 若是誠然 則興立亦 叛奴懲治乙 若不成事 則末叱文

還給之意 以祖父處不忘記奉置爲可是白置 同不忘記信吉處相考事白活 則信吉招內 本無不忘記是如 終不現納是白遺 本文記段置 亦爲闕失是如 亦不現納爲有置 大概興立叛奴懲治 在於未能之事 而末叱文自筆成文實然 則以將來未能之事 豈有年少使喚婢成文出給之理乎…奴主相訟事係綱常訟官教是 如此曲折 詳查明決 以定順立等叛主兇慘之罪教味白齊…

33 …本主是如爲在 孫興立之孫羅州孫遇柳 移文捉來推問次以 壬戌正月十九日孫遇杓年五十七白等 戶口的 汝矣祖父孫興立亦 婢末叱文一婢乙 初爲放賣於金尙鉉之父克楨處爲有於 厥後己巳年又爲放賣於令奉金處爲有臥乎所 兩邊買得 俱是經官斜出是在如中 必有其間是非曲折是於 順立等招內 末叱文所付本文記背頃 一款相考 則可知其眞僞是如爲置 同本文記亦更現納於汝矣處相考爲如乎 同婢末叱文背頃處刀割後 付背他紙及改後連行追書之跡 十日所視 難以逃跡 此間辭緣 一現告亦推問教是乎臥在亦…

34 …同婢末叱文兩處放賣文記相考 則目見則俱是矣祖父 自手筆跡着署 於明白無疑是白乎於 本文記背頃處刀割 付背他紙及改後字行連有追書之跡段 矣身亦以後生 久遠文記乙 未能詳知叱分不喻 其他放賣先後段置 實難知某人之買得爲是非是白去乎 並以相考處決教味白齊…

音)을 했다.

무안현에서는 초사와 원고 및 피고가 제출한 문기를 고찰하여 판결을 내렸다. 무안현의 판결에 큰 영향을 미친 것은 “손우표가 소지한 본문기”였다. 무안현에서는 손홍립이 먼저 김극정에게 방매했고, 김극정은 사급을 받았다고 파악했다. 이후에 무안현에서는 손홍립이 본문기에서 끝문을 배탈한 부분을 할거하여 고쳐서 뒷면에 다른 중이를 붙인 후에 전만희에게 방매했다고 생각했다. 원고의 사급입안이 위조라는 피고의 주장에 대해서 무안현에서는 원고가 제출한 1649년 3월의 입지를 근거로 위조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또한 손우표가 제출한 문서 중에 우표의 아버지 신길에 올린 ‘김 동지(=김운해)가 손씨 집안의 도망 노비를 추심해 주겠다고 하자 우선 손홍립이 방매하는 모양으로 명문을 작성해 주었다는 내용의 소지’는 증거로 채택하지 않았다. 따라서 나주목에 등록이 없다는 이유로 말꼬리를 잡을 수 없고, 문제의 발단인 손홍립의 중복방매의 죄를 가릴 수가 없다는 논지로써 관찰사에게 보고했다. 이는 피고 측이 하루아침에 도로 천인이 될 수도 있는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송관의 식견만으로 판단 내리기에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³⁵

관찰사는 무안현의 보고와 각 사람들의 초사를 상고한 결과, 손홍립이 1626년에 김극정에게 방매한 것이 분명하므로, 손홍립과 손우표에게 중복 방매한 죄가 있다고 판단했다. 또한 주인을 배반한 노 등의 후손은 사천의 후손으로 양역에 속하게 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결론을 내리고

35 …爲等如 招辭是置有亦 參以招辭 且考彼此文記 則所訟婢末叱文乙 元告金尙鉉之父克楨段 去丙寅年分 孫興立處 買得官斜是乎於 隻全卜立之祖父段 已巳年分 亦爲孫興立處 買得官斜爲有臥乎所 金克楨買得是則萬希之買得非也 萬希之買得是則金克楨買得非也 必居一於是是在果 大概孫興立兩處放賣明文 俱是自筆著署 則事當先後各別處決是乎矣…則當初丙寅年分 金克楨官斜時 末叱文背頃處乙割去 而改以付背他紙後 已巳年全萬希處官斜時 背頃事顯著無疑是乎於…以此觀之則 奉金之符同 信吉及興立之重復放賣之跡 顯有難掩是沙餘良 以此証飾所志 亦爲金克楨買得之實是乎等以 所當先後分揀 決給於元告金尙鉉處是乎矣 隻卜立等謀叛或漕軍 或砲保 或上兵 良役之輩乙 以一時訟官識見 一朝還賤 事係重大不敢輕易擅決乙仍於 各人等招辭及文記等並只 枚舉牒報爲去乎 道以參商行下爲只爲…

이를 무안현에 회송했다.³⁶ 이 회송에 따라 무안현은 1682년 2월 4일에 손우표, 전복립, 전순립을 잡아 와서 각각 형추(刑推)하여 신장(訊杖) 30도를 가했다. 손우표, 전복립과 순립은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다고 하였으나 같은 날 무안현은 손우표를 다시 추문했다.

관에서는 손우표의 조부가 전만희에게 방매한 문기에서 비 끝문의 딸 봉화의 나이가 경술로 되어 있는 반면, 순립 등이 가지고 있는 명문에는 을축으로 되어 있고, 베껴온 남평현 호적에는 임술생으로 되어 있는 점을 들어 봉화의 실제 나이에 대해 추가적으로 물었다. 이에 손우표는 방매가 자신의 조부 대에 있었던 일이므로 정확히 무엇이 옳은지, 현재 거주지도 남평현이 아니라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다만, 자신의 아버지에게 들은 바로는 끝문을 김극정에게 방매할 당시 봉화가 이미 잉태된 상태였다고 말했다.³⁷

모든 진술과 조사가 마쳐지자, 무안현은 손우표가 조부의 중복방매의 흔적을 가리기 위해 순립 등과 함께 옳지 못한 일을 꾸몄고, 이를 용서할 수 없어 1차로 엄형을 가하여 죄를 다스려 가렸으나 돌려보내는 것이 적절할지 관

36 …題辭內 各人等招辭相考 報狀內事緣參考 則孫興立之丙寅年放賣於金克楨明文無疑 而叛奴等背頃處割去 用奸之狀 昭不可掩是置 重復放賣之罪 雖在於興立·遇杓之符同 叛奴以不成說話之一張所志 欲實虛無之狀 殊極駭愕是於 叛奴等 假托良役 不有上典 作隻立訟之狀 亦極痛駭 孫遇杓·順立等乙 各別刑推爲乎矣 叛奴等 雖定漕軍砲保正兵之役 明知爲私賤之後 不當仍屬 本役金尙鉉處決給向事 回送是齊…

37 …依回送刑推次以 壬戌二月初四日孫遇杓年五十七 奴卜立年四十八 奴順立年四十六白等 汝矣所訟奴婢等 所付文記 一 枚舉 牒報書目回送內孫興立丙寅年 放賣於金運海 明白無疑 而孫遇杓符同叛奴等 欲實虛無之狀 殊極駭愕 並只各別刑推亦爲有置 使回送內兒如 刑推施行教味白齊 同日各各刑推 一次訊杖各三十度 更推白等 矣徒等 所懷已悉外 前後招辭中更無所拱之辭是白去乎 相考則分揀報使施行教味白齊 同日孫遇杓更推白等 婢末叱文之女奉花之年歲乙 當初汝矣祖父興立亦 全萬希處 放賣文記內 庚戌是如爲有於 其同生甥順立等明文段 乙丑是如爲於 南平縣戶籍牒來相考 則壬戌生是如爲有臥乎所 一婢之年歲三處相左 必有其之間九歲之女 萬無生女之理 汝矣等 用奸之跡 節節敗露 其間辭緣及同婢奉花實年甲 並以從實直告亦 推問教是臥乎在亦 奉花之放賣 在於矣祖父生時 所爲之事也 矣身以後生 實難知其是非是乎於 南平縣戶籍相左事段置 居在他官 亦未知其非是白在果 矣父生時言語間 婢末叱文放賣於金克楨時孕胎爲白有如何 仍生奉花是如爲乎等以 此則聞之而已 實無其間用奸之事是去乎 相考處決教味…

찰사에게 명령을 내려 달라고 요청했다. 관찰사는 손우표를 방송(放送)하되, 주인은 배반한 노에게는 다시 추가로 엄한 처벌을 내리라고 지시했다. 그러나 곧이어 관찰사는 다시 무안현에 관문(關文)을 보내, 끝문을 김상현에게 발급하지 말고 이 소송을 다시 조사하여 처리할 것을 지시했다.

이에 무안현은 김상현과 각 사람들의 문기를 전준하고, 이를 받아 관찰사에게 올려 보냈다. 이후 서목(書目)의 회송(回送) 내용을 살펴보면 관찰사가 원고와 피고의 명문을 다시 상고한 결과, 손홍립이 전만희에게 방해한 명문에서 끝문의 1소생 봉화의 나이가 경술생으로 기록됐는데, 본래 임술생이 맞고 임술(壬戌)생의 임(壬)자를 경술(庚戌)생의 경(庚)자로 잘못 오인한 것에 불과하지 간사한 실정이 없다고 판단 내렸다. 즉, 봉화는 1622년에 태어났으므로 손홍립이 김극정에게 끝문을 팔았던 1626년보다 앞서는 시기에 태어났으므로 끝문의 후소생이 아니었다. 즉, 손홍립이 전만희에게 방해한 문기에 따라 전만희의 몫이라고 볼 수 있었다. 따라서 비 봉화의 소생은 관찰사의 분부에 따라 전만희에게 발급하고, 비 끝문은 김상현에게 발급해 주었다.³⁸ 이로써 3차 무안현 소송이 끝났다.

3. 관사 문기에 대한 민의 인식과 대응책

결국 무안현 소송에서 중복방매가 가능했던 이유는 손홍립이 김극정에게 비를 판 뒤 본문기를 위조한 사실에 있다. 이는 방매가 이루어진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끝문이 도망갔고, 김극정은 어린 아들만을 둔 채 사망했기에 가능했을 것으로 추측된다. 문제는 약 10여 년이 지난 후, 세력 있는 사람이 김극정의 또 다른 비를 강제로 취했을 때 개인의 힘으로 관의 등록에 기재된 내용을 할거할 수 있었던 점에 있다. 이는 김극정의 아들 김상현이 성장하여 노비를 추심하고자 했을 때 불리하게 작용했다.

이처럼 관에서는 개인 간의 노비 매매 이후에 사급입안의 신청이 들어오면 관련 치부 기록을 등록으로 작성해 두었을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이를 다시 개인이 삭출해 가는 것이 비교적 용이했던 모습도 확인된다. 더욱이 큰 문제는 관에서 사급에 관련된 등록을 만들어 두었음에도 불구하고, 누군가 열람을 요청하기 전까지는 그 내용을 열어보지 않았다는 점이다. 또한 등록에 이미 해당 물건(物權)에 대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더라도, 사급입안의 발급요청이 들어오면 들어오는 대로 매매와 관련한 증언자의 진술대로 사급입안을 발급해 주었다는 점이다. 관에서 등록을 작성해 둔 것은 분명 관에서 발급해 주는 문서의 공증력을 보장하는 최소한의 안전장치였을 것이나 운영 방향에 있어 미흡한 부분도 존재했다. 이러한 문제는 사급 관련 등록의 작성 방식에서 발생한 것으로, 관에서 사급 관련 등록을 어떻게 작성했는지, 관에서 문제점을 인지하고 어떻게 개선하려고 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무안현 소송에서 김상현이 제출한 증거문기 중에는 1694년 3월에 나주목에서 받은 입지가 있다. 이 입지는 심기원이 득례를 빼앗아 가면서 사급 관련 등록에서 득례의 이름을 할거할 때 끝문의 이름도 함께 들어갔음을 증명해준다. 여기서 나주목의 사급 관련 등록의 기재 양상이 파악된다. 끝문의 이름과 득례의 이름이 같은 행에 있

38 …卽刻到付文關內 前月本縣報狀 全卜立·順立等 本主金尙鉉處 決給爲 旽 叛奴等乙 刑推牒報事 題送爲有如此 此訟更有查處之事 全卜立·順立等 姑餘刑推亦 勿決給於金尙鉉處 以待改分付處置向事 關是齊 追後到付使關內 羅州居金尙鉉奴婢相訟文記 更有查處事 同金尙鉉及各人所訟文記 到關卽時 上使向事 關是乎等以 同金尙鉉及各人等文記准授 上使爲有如此 書目回送內 兩隻明文 更良相考 則孫興立·全萬希處放賣文記中 未叱文一所生奉化之年以庚戌書下 有八字以已過逆數 則壬戌生之實是去乙壬字書以庚字 不過字誤 無奸細情跡 而同婢奉化以壬戌生兒 不入於丙寅年放賣文記 則明是買得前所生 不可謂金尙鉉之婢是置 未叱文所生 則金尙鉉處 仍爲決給爲遣 奉化所生乙良 全萬希以施行 宜當向事 回送是乎等以 婢奉化所生(段) 依使分付 全萬希處 決給爲旽 婢末叱文段 金克(楨) (丙)寅買得後所生段 元告金尙鉉處 後錄決給(爲)遣 後考次合行立案者.

어서, 이로 인해 자연히 득례를 할거하면서 끝문의 이름이 함께 포함되었다고 했다. 이는 연서(連書)의 방식으로 등록이 기재되었음을 의미하며, 사급입안을 신청하는 사람에게 원본 문서를 제공하기 전에 관에서 이를 특정한 서술 방식과 형태로 정리했음을 시사한다. 또한, 이 등록에는 관인(官印)이 찍혀 있었다. 나주목에서 심기원의 할거 근거로 2장 사이의 인적이 서로 어긋난 것을 보니 칼로 베어 내어 수정한 것이 분명하여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한 처분에서 확인된다.³⁹

김극정이 1626년에 나주목에서 사급입안을 발급받았고, 그 아들 김상현이 1649년에 나주목에서 입지를 받았다. 그렇다면 24년 동안 사급 관련 등록 기록이 나주목에서 보관되고 있었음을 의미한다. 지방 관의 등록이 열람과 할거가 용이했을 뿐만 아니라, 보관 연한이 상당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지방 관의 등록 보관 기간을 살펴볼 수 있는 자료가 있다. 1721년(경종 원년)에 남양부(南陽府)에서 부안 김 진사 덕의 노(奴) 자룡(自龍)에게 발급해준 소지가 그 예시다. 자룡의 옛 상전은 예전에 남양관에 사는 최급에게서 비(婢) 성춘(成春)과 성춘의 소생 자녀 4구를 매득한 후 남양관에 사급을 받았다. 그러나 옛 상전이 일찍 사망하고, 현 상전은 아직 어린 나이여서 그만 빚기(斜只)문서를 분실하게 되자 자룡이 남양관에 소지를 올려 입지를 성급해달라고 요청했다. 자룡의 상전 집안에서 전하는 여타 고문서를 종합하면, 자룡의 옛 상전은 1666년에 사급을 받았으므로, 발급된 지 55년이 지난 후에도 사급 사실을 증명해 줄 수 있는 특정 자료가 남양관에 보관되었음을 유추할 수 있다. 이 경우만 놓고 보더라도, 55년이 지난 후에도 지방 관에서 관사 문기와 관련한 특정 문헌을 보관하고 있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18세기 초반 남양관의 사급 관련 등록은 엽질로 표현되었다. 자룡은 ‘관사문기를 잃어버렸지만, 당초 빚기를 받을 때 엽질(葉作)이 본

부의 지통 안에 있으므로, 지통 안에 있는 엽질을 일일이 상고하여 입지를 성급해 달라.’고 요청했고, 남양관은 이에 응하여 입지를 성급해주었다.⁴⁰

사급 관련 관의 등록에 대한 특징을 정리하면, 연서 방식으로 기재된 등록의 형태 또는 엽질의 형식으로 존재했던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시기와 지역, 그리고 담당자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정해진 일정한 등록 방식은 없었던 것 같지만, 시기와 지역을 불문하고 지방 관에서 사급에 대한 치부 기록을 남겼다는 점은 분명하다. 특히, 17세기 무안현을 포함한 전라도 지역에서 매매가 있는 뒤 관에서 등록이 작성된 경우는 노비 매득에서 본문기를 배탈한 경우였다. 피고 전복립과 순립이 소송을 이끌고 간 중요한 논리 중 하나는 당시 노비를 매득하는 일반적인 방법에 대한 문제의식이었다. 이들은 노비를 매매할 때 본문기를 배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주장은 당시 매매 관습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조선시대에는 노비나 토지 등의 매매 시 구문기(舊文記)와 신문기(新文記)를 새로운 매득자에게 건네주는 관습이 있었다. 구문기는 신문기에 대비되는 개념으로 이전에 있었던 매매와 관련된 문기를 의미한다. 만약 매매 대상이 일부에 그친다면, 구문기를 함께 넘겨주기 어려웠으므로 본문기(=구문기)의 앞면에는 효주를 표시하고, 뒷면에 배탈을 하여 신문기만을 매득자에게 건네주었다. 피고들은 이러한 매매 관습에서 당시 사회의 중요한 모습을 더 증언해 주었다. 바로 배탈로 매매가 이루어진 경우, 관에 등록을 거쳤다는 점이다.

피고의 증언이 구체적이지 않아 등록의 형태를 알 수 없지만, “에당초 본문기를 배탈한 일이 없고, 또 등록이 없으므로 그 사급이 위조인 것이 분명하여 의심할 것이 없다”고 주장함으로써 배탈 매매에서 관의 등록 과정을 거

39 …題辭內 昨以汝矣所訟之言 不以爲然 今此相考則兩張間印迹相違 刀割分明 沈賊割去事之顯著無疑仍于 後考次 以立旨成給事 所志題辭是齊…

40 권이선, 「고문헌에 나타나는 자[上]의 용례와 문서 보관제도」, 『민족문화연구』 83,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원, 2019, 315~316쪽.

쳐야 함을 언급한 것이다.⁴¹ 이는 손흥립이 김극정에게 끝문을 팔 때, 손흥립이 소유한 노비 중 일부만을 판 것이므로 구문기 전체를 김극정에게 줄 수 없었고, 끝문이 기재된 본문기의 앞면에 효주를 하고 배탈을 받았어야 함을 시사한다. 그리고 배탈 이후, 관에서 등록의 과정을 한 번 더 거쳤음을 의미한다. 즉, 개인 간에 배탈 매매가 이루어진 경우, 관에 이와 관련된 치부 기록이 있어야 하고, 그렇게 해야만 관에서 발급받는 사급입안도 정당한 절차를 거쳤다고 인정받을 수 있었다.

그래서 피고 측에서는 나주목에 끝문 관련 등록 치부 기록이 없으므로 손신길의 조사와 같이 애당초 손씨 집안에서 김극정에게 끝문을 방매한 적이 없다고 주장한 것이다. 이에 ① 병인년(1626년, 인조 4)의 등록을 상고하여 회이(回移) 해 줄 것과 ② 정묘 식년(1627년, 인조 5) 김 동지의 호적에 대한 기록 내용과 ③ 손신길의 자손이 본문기를 가지고 오도록 해 줄 것을 요청했다.⁴² ①은 배탈 매매에서 원고 측이 사급입안을 발급받았다면 관에 등록이 있는지를 확인하자는 것이다. ②는 만약 정말로 1626년에 김씨 집안에서 끝문을 매매했다면 그 이듬해인 정묘년에 김씨 집안의 호적에 끝문이 기재됐을 것이므로 해당 내용을 확인해 달라는 것이다. ③은 끝문의 매매가 배탈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손씨 집안에서 소유한 노비 중 일부만을 판 것이므로, 본래 끝문을 포함한 손씨 집안에서 소유한 전체 노비가 기록된 본문기를 가져올 것을 손씨 집안에 지시해 달라는 요청이었다. 손흥립에게 끝문은 양변(養邊)에서 얻은 몫의 일부였고, 득례는 처변(妻邊)에서 받은 몫이었다. 따

라서 손흥립에게는 이 둘을 포함한 더 많은 노비가 적힌 매매명문 또는 분재기 같은 본문기가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 이중 일부만을 김극정에게 파는 것이므로 전체 본문기를 건네줄 수 없어서, 자신의 본문기 뒤에 배탈을 하여 관의 증명을 받았던 것이다.

예를 들어 1731년(영조 7)에 아버지 김대(金岱)가 아들 김지원(金智元)에게 별급해준 문서가 있다. 아버지는 아들이 혼인한 후에 부릴 수 있는 노비가 부족하자 성주에 사는 비 귀진(貴眞)의 2소생 비인 조이(召史)를 주었다. 이 별급문기의 뒷면에는 배탈이 기록되어 있는데, 1732년(영조 8)에 현풍현(玄風縣)에서 작성해준 배탈사급입안이 그것이다. 김지원은 별급 받은 비를 장필용(張弼用)에게 방매하면서 본문기를 건네주는 대신, 현풍현으로부터 본문기의 뒷면에 배탈을 받았다.⁴³ 이러한 배탈사급입안은 주로 노비매매명문 보다 상속 노비를 다시 매매할 때 주로 사용되었다.⁴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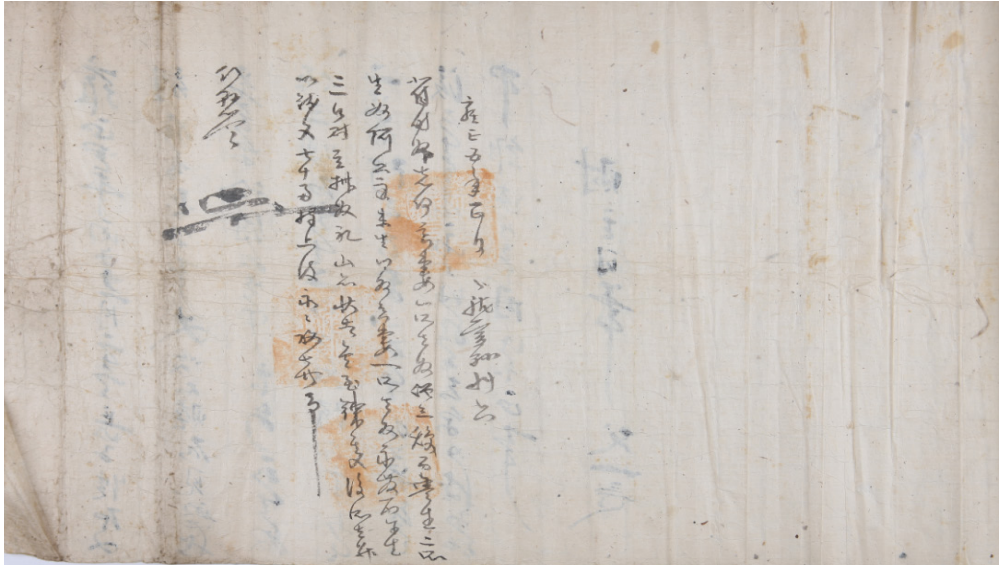
현풍현의 배탈사급입안과 유사한 문서로 1726년(영조 2)에 아버지 권수원(權壽元)이 장남 완(完)에게 별급해준 문서가 있다. 아버지는 아들이 부릴 노비가 넉넉하지 않으니 몫으로 받은 노 선이(先伊)가 양인 아내와의 사이에서 낳은 1소생 노승(奴僧) 삼환(三煥), 2소생 노아지(阿只) 2구와 아지가 양인 아내와의 사이에서 낳은 1소생 노영도(英都)를 후소생 아울러 영원히 방매했다. 이 별급문기의 뒷면에는 용궁현(龍宮縣)의 배탈사급입안이 있다. 1727년(영조 3)에 용궁현에서 발급해준 이 배탈사급입안은 노 선이의 소생인 노승 삼환, 삼환의 2소생 아지, 아지의 1소생 노영발(永發)의 3구가 김질속(金至鍊)에게 방매됐음을 증명해준다. 배탈사급입안에는 현감의 서압(署押)뿐 아니라 관의 인장까지 답인(踏印)되어 있다. 현재까지도 해당 별급문기는 안동권씨 집안에 전해지고 있다. 이는 방매된 이

41 …同日隻卜立順立等 更推白等 年少後生以 祖父生時久遠之事 未能詳陳於原情中是在果…凡奴婢買賣之法 本文記背頃 果騰錄是白去乙 金同知買得丙寅 雖云己巳年之前 初無本文記背頃之事 又無騰錄 則其爲斜出之偽造明白無疑乙仍于 初訟羅州時 財主孫興立子信吉招內 同末叱文金運海處 初無放賣之事是如 納招據 其時訟官主 果知尙鉉非理 尙鉉段退黜爲白遣 矣父處決給 已至三十五年之久 其間寂無一言 含默退坐爲有可如 具何室見 今始提起非理之事是乎喻 其間生謀 情迹抑料不得事是在果…

42 …同婢丙寅年盡騰錄相考回移 且憑查僞爲白乎於 又有一款金同知 亦同婢末叱文 丙寅年實爲給價買得則翌年丁卯式年金同知帳籍中 應爲懸錄本文記亦入于中乙仍于 同金同知帳籍與否 果信吉子孫 本文記取來事 及羅州牧騰錄鈔送事…

43 한국정신문화연구원, 『고전자료총서 82-2 광산김씨 오천고문서』, 별급문기, 1982, 215쪽.

44 문속자, 앞의 논문, 100쪽.



〈그림 1〉 1727년 용궁현 배탈사급입안(한국학자료센터 영남권역센터)

후에도 해당 본문기를 매득자 김질숙에게 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중복방매를 방지하기 위해 본문기 즉, 별급문기 뒤에 배탈사급을 받은 것이다.

곧 무안현 소송에서도 손홍립이 자신의 본문기를 김극정에게 출급해 주지 않았으므로, 손홍립이 가지고 있던 본문기 뒷면에 배탈사급이 있어야 하는데, 그것이 없다는 점을 피고 측에서 문제 삼은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들이 주장한 등록은 무엇이었을까? 이는 1584년(선조 17) 나주목 결급입안에서 파악해 볼 수 있다. 1584년 나주목 소송은 자식 없이 사망한 여인의 재산을 두고 의자(義子)와 본족의 사손(使孫) 사이에 벌어진 다툼이었다. 이 소송에서 자식 없이 사망한 여인이 생전에 팔았던 전민(田民)이 의자에게로 이매(移買) 되었는지 여부가 조사됐다. 이때 거평리에 사는 노 만억(萬億)의 진술이 눈에 띈다. 만억이 상전 전억명(田億明)을 대신하여 소지를 올리는데, 이는 피고 나기년(羅祺年)의 조사에 의거하여 관에서 전억명에게 비삼월(三月)을 매득했다는 문기를 바치라고 추착(推掇)했기 때문이다. 비 삼월은 원래 주인인 나기년의 의모(義母)가 살아 있을 때 전억명에게 방매하여 전억명이 사출 받은 비자였다. 이 당시 전억명은 정병(精兵)으로 북도(北道)에 들어간 것이었기 때문에, 노 만억이 대신 소지를 올렸지만, 만억은 상전인 전억명이 매득 문기를 어느 곳에 보관했는지

몰라서 찾아 바치지 못했다고 말했다. 다만, 비 삼월을 매득한 진위는 관에 보관된 등록을 상고하여 시행해 줄 것을 요청했다.⁴⁵ 이는 매매가 이루어진 뒤에 관에서 사출을 받았다면, 비록 매득자에게 매매명문이 없더라도 매매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등록이 관에 보관됐음을 시사한다.

자신에게 유리한 증언과

문기를 제출하는 송정(訟庭)의 특성상 소송 과정 중의 발언은 항상 신뢰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당시 사람들은 관에서 발급한 사출문서는 인정하되, 사출 과정에 대해서는 다소 신뢰성이 떨어지는 경향을 보였다. 1584년 나주목 소송에서 원고 정천희(鄭千希)와 손한(孫翰)은 “피고 나기년 측이 사출 받은 것처럼 명문을 위조하여 점련한 후 색리에게 접수한 소지가 사출한 것과 다름없다고 초사를 바쳤으나, 무릇 색리에게 접수시킨 소지는 비록 하루 내라 하더라도 여러 차례 관인을 받는 것이 전혀 어렵지 않다”고 주장했다.⁴⁶ 관의 사출을 통해 발급된 사급입안은 백문과 다른 위상을 가졌으나 사출 과정에 대해서는 일정 위단(違端)이 있을 수 있다고 본 것이다.

무안현 소송을 비롯한 다른 소송에서도 당시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사출 과정에서 색리가 농간을 부릴 가능성을 염려했다. 즉, 사출을 받을 때 문서를 위조하려는 자와 색리의 결탁이 가능한 구조였고, 이에 따라 불신이 형성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구조적 문제는 중복방매에서 사급입안의 효용성에 대해 일정한 한계점을 보여주었다. 무안현 결송입안에 따르면, 2차 나주목의 소송 때 전봉쇠는 경관문기(=사급입안)를 제출했으나 김 동지(=김운해)는 백문

⁴⁵ 심희기 등 역, 『조선시대 결송입안 집성』, 민속원, 2022, 264쪽.

⁴⁶ 위의 책, 262쪽.

만을 제출했다고 한다. 그래서 당시 송관이 김 동지를 꾸짖어 발괄[白活]도 들어주지 않은 채 문기의 선후로 분간을 하여 주었다. 이때 분명히 먼저 매득이 이루어지고 문서가 작성된 것은 김상현의 집안이었다. 다만 등록의 치부에 김상현 집안에서 사급을 받은 기록이 없었다. 사급입안 발급은 신청자의 요청에 따라 이루어지므로, 관의 등록이 매매 사실을 증명하는 중요한 요소였던 것이다. 그러나 뒤늦게 사급입안을 발급받은 척 등록을 위조할 가능성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나중에 김상현이 사급입안을 제출하자 전봉쇠 집안에서는 이를 하리와 김상현이 짜고 뒤늦게 사급입안을 발급받은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이다. 만약 정말로 김상현 집안에서 먼저 매득하고 사출을 받았다면, 그 뒤에 전봉쇠가 어느 곳에서 손흥립의 본문기 뒷면에 효주(效周)를 하고 등록을 치부할 수 있었겠냐는 논리였다. 즉, 김상현 집안의 사급입안은 위조라는 주장이었다.

2차 소송의 원고 전봉쇠와 피고 김상현의 주장이 팽배하게 맞서자, 본래 주인이었던 손흥립을 잡으려 했으나 이미 손흥립이 사망한 상태였기에 그 아들 신길을 잡아와서 원고와 피고가 동시에 추열하는 일이 있었다. 이때 나주목 사는 손신길에게 원고와 피고 모두에게 매득 문기가 있는 이유를 묻는다. 손신길은 김상현의 조부와 자신의 아버지가 서로 잘 아는 사이였고, 집안의 도망노비 22구를 김상현의 조부가 찾아주겠다고 했기 때문에, 자신의 아버지가 가까운 땅에서 거생하며 사환할 수 있는 비자(婢子)를 김상현의 조부에게 방매하는 모양으로 명문을 작성해준 바가 있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실제로 김상현의 조부가 추심하지 못했기에, 도로 김상현의 조부에게 준 백문을 추급해야 했으나 시일이 미루어졌고, 이후 1629년에 전만희가 자신의 며느리 끝문과 그녀의 소생 비 봉화, 봉비 등 3구를 매득하고자 하여 손흥립이 전만희에게 문서를 작성해 팔았다며 진술을 마쳤다. 손신길은 김상현의 조부가 살아 있을 때 그 아들 김극정에게 방매하고 사출을 받았는지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겠다고 말했다.

이처럼 관에서 관사 문서가 이중 발급될 수 있었던 이유는 ① 사급입안의 발급이 신청자의 요청에 따라 가능했던 점 ② 일종에 안전장치였던 관의 사출 관련 등록 역시 색리의 위조가 가능한 점 ③ 중복방매를 시도한 개인의 일탈로 정리할 수 있다. ①과 ②는 구조적 문제이며 ③은 사적 문제로 볼 수 있다. 문제점이 해결될 뚜렷한 제도적 장치가 없었으므로, 매매에 참여하는 개인이 최대한 많은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상책이었다. 당시에도 이러한 문제점을 인지했기에, 노비의 매매 또는 분재 받은 노비의 매매에서 배탈사급을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특히 분재 받은 노비의 경우, 매매를 할 때 뒷면에 효주하고 인신(印信)을 찍어 관의 사출을 받는 것이 합당한 절차였던 것으로 인식되었다. 16세기 말~17세기 초에 발급된 제주목 결급입안에서도 이러한 인식이 확인된다. 이 소송에서 원고는 만약 피고가 물려받은 노비를 방매했다면 반드시 뒷면에 효주했어야 하는데 효주한 곳이 전혀 없으니 피고가 제출한 문기는 격식에 어긋난 문서라고 주장했다.⁴⁷ 뒷면에 효주를 한 것은 본문기에 다른 노비가 함께 기록됐기 때문이었다. 이는 1662년(현종 3) 제주목 결급입안에서 확인된다. 1662년의 제주목 소송에서 원고와 피고가 각자 증거문기를 관에 제출하자 관에서 증거문기를 전준하는데 이때 문서의 내용이 기록되어 확인된다.

정의현 입안의 말미에 “본문기를 받아 상고하니, 만력 39년 신해년(1611, 광해군 3) 4월 19일 제주 복심, 증인 겸사복 이덕인, 필집 서리 박증원이 착명하고 착서해서 만들어 둔 문기에 ‘처 쪽 조상이 전래한 제주성 건입포에 사는 사망한 비 신심 2소생 비 가이장 나이 31, 위 비 가이장의 득후소생 노가 이동 나이 6세이다’라고 하는 장예원 입안이므로 노 가이동 나이 8 병오생을 매득한 전량에게 공증해주고 본문기는 다른 문서가 함께 올라갔기 때문에 뒷면을 효주한 뒤 본 주인에게 돌려주니, 증빙해서 나중에 상고하기 위해 이에 입안함. 정의

47 위의 책, 395쪽.

현, 관이 착서하고 관인을 찍음”⁴⁸

본문기를 새로운 매득자에게 줄 수 없는 부득이한 상황에서 뒷면에 효주를 한 뒤 본래의 주인에게 돌려주는 과정이 확인된다. 송정에서 원고와 피고의 진술 외에도, 관의 판결 부분에서도 효주와 배탈의 과정을 중시하는 모습을 살필 수 있다. 1719년(숙종 45) 구례현 결급입안의 송관 판결 부분에 따르면, 구례현의 송관은 원고가 제출한 용인 관에서 발급한 부화입안(付火立案)을 위격(違格)으로 보았다. 계쟁 논이 기록된 글의 항을 칼로 잘라내고 다른 붓으로 새 종이에 고쳐 쓴 위조의 흔적이 명백하고, 원고의 형이 계쟁 논을 매득하여 관의 입안을 받았다고 하나 이 논이 기재된 곳을 효주하고 배탈하지 않았으므로 격례(格例)를 위반한 문서라는 이유였다.⁴⁹

본래 사출(斜出)의 법, 즉 사급입안을 발급하는 것은 간사함을 방지하는 데 목적이 있었다. 1781년(정조 5)에 한성판관 송익수(宋翼洙)가 전답의 전례(前例)에 의거하여 경주인 문권도 백문 거래를 하지 말고 관사(官斜)를 받도록 할 것을 건의한 바 있다.⁵⁰ 그러나 이전부터 관사(=사출)는 경향(京鄕)을 막론하고 토지에서 보다 노비의 매매에서 활발하게 받는 경향이 있었다.⁵¹ 이는 현전하는 실물 문서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 상속받은 노비를 방매할 때 더욱 배탈사급입안을 발급받고는 하였다. 분재기에는 부변(父邊), 모변(母邊) 등으로부터 물려받은 상당수의 노비가 기재되었기 때문이다.

조선시대에 사용된 사출과 관사는 같은 의미였다. 배탈은 변동 사항이 발생했을 경우 해당 부분을 표시하거나 효주하고 그 문서 뒷면에 변동 사실을 기재한 것을 의미한다.⁵² 효주는 말소할 부분에 효(爻)자를 긋고, 표시할 부분

에 동그랗게 주(周)자를 그려내는 방법으로 배탈을 표현하는 방법 중 하나였다. 즉, 효주는 행위이고 배탈은 그 결과를 뜻한다고 할 수 있다. 개인의 소유권을 관에서 공증해주는 과정 중에서 간혹 서리와 결탁하여 위조의 흔적이 있을 수 있었으나 이는 중간 과정의 문제였다. 본질적으로 관의 사출을 받는다는 것은 매매나 소송에서 결정적인 증거로 작용했다. 이를 보증하는 또 다른 방식 중 하나로 사출에 관한 치부 기록이 등록으로 관에 보관되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관에서 보관한 사출에 관한 치부 기록, 등록이 정말로 존재했는지 의문이 생긴다. 아직까지 관에 보관된 사출의 등록이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매매가 이루어진 뒤에 매득인이 배탈사급입안을 신청하고, 이를 수취한 이는 방매자(放賣者)인 점과 배탈사급입안의 발급 목적 및 시기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졌지만⁵³ 배탈사급입안과 거의 동시에 치부된 사급 및 배탈사급의 등록에 대해서는 주목받지 못했다. 그러나 사급입안 관련한 등록이 현전하지 않을지라도 관에서 사무를 인계할 때 적은 장부인 중기(重記)를 통해서 사급입안의 등록 존재를 파악할 수 있다.

〈표 3〉『도중기(都重記)』속 사출 관련 문서(국사편찬위원회 전자자료관 소장)

자호	개인매매 또는 사출 관련 보관 문서
地字	咸陽 崔景鉄 縣居 金芝山等 明文 壹道 金振鮮 · 金立伊等, 官作文書壹道 官奴銀伊 汝云等 作文 壹道
玄字	洪大海 奴婢花名 壹張 癸亥斜出冊 壹 壬辰斜(只)案 壹 甲子斜只置付冊 壹 庚午作文置付冊 壹 甲戌奴婢斜只案 壹 己卯斜只案 壹 丙戌斜只案 壹 乙卯斜只案 壹
黃字	吳震賢奴婢斜出立案 壹道, 全州 金欣禮 鄭時處 作文 壹道 洪起源 田畚買得文 壹道 田畚斜只案 壹 姜莫乃 李貴日 官作立案 壹道
宙字	縣居 禮男 朴必奉等 田畚己物 官作財主文 壹道 斜只案 壹

⁵³ 문순자, 앞의 논문, 101쪽.

⁴⁸ 위의 책, 625쪽.

⁴⁹ 위의 책, 955~956쪽.

⁵⁰ 『승정원일기』 1494책, 정조 5년 9월 21일(경신).

⁵¹ 『영조실록』 28권, 영조 6년 12월 29일(계해).

⁵² 국사편찬위원회 편, 『한국고문서입문』 2, 민속원, 2021, 646쪽.

1687년(숙종 13)에 안음현의 현감 유세빈(柳世賓)이 남긴 『도중기(都重記)』⁵⁴에는 관이 중심이 되어 수취하고 작성한 문서에 대한 기록이 남겨져 있다. 『도중기』의 구성은 천자문 자호(字號)의 순서로 천자(天字)부터 주자(宙字) 그리고 현임 수령의 재임 기간 중에 수발 받은 등내(等內)로 이루어져 있다. 여기서 개인 간의 매매와 사급 관련 등록 내용은 위〈표 3〉과 같다.

당시 안음현에는 관작문서(官作文書), 질문(作文)이라는 명확하지 않은 문서군이 보관되고 있었다. 관작문서 앞에는 개인의 이름이 있는 것으로 보아 사인(私人) 간의 권리 또는 분쟁에 대해 관이 중심이 되어 조정해주면서 작성된 문서로 보인다. 이는 주자(宙字)의 지통(紙筒)에 보관된 현에 사는 예남(禮男)과 박필봉(朴必奉) 등의 전답 기물에 대한 관작재주문(官作財主文)을 통해 유추할 수 있다. 관작재주문은 관이 재주가 되어 작성해준 문서를 의미한다. 질문의 경우 아전의 근무처인 질청(作廳)과 같이 관에서 공공의 행위로써 작성된 문서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도 안음현에는 개인의 명문(明文)과 노비의 화명(花名)도 보관되고 있었다. 이것들은 소송 중에 증거로 제출된 증거 문기일 수도 있고, 사급입안이 제때 발급되지 못해 잠시 관에 보관된 문서일 수도 있다.

사출 관련 등록으로 추정되는 문서는 ① 사출책(斜出冊) ② 사지치부책(斜只置付冊) ③ 질문치부책(作文置付冊) ④ 사지안(斜只案) ⑤ 사출입안(斜出立案)이 있다. 『도중기』에서 사출책은 1건, 사지치부책 1건, 질문치부책 1건, 사지안은 7건, 사출입안 1건이 등장한다. 사출책은 사지치부책의 준말로 보인다. 관에서 공증을 해준 다는 의미의 사지(斜只)와 관이 주체가 되어 작성해준 질문(作文)의 공통 요소는 관이다. 따라서 사지치부책과 질문치부책의 성격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 가장 많은 제명(題名)은 ‘사지안’이다. 사출책과 사지안은 유사한 의미

일 수 있으나, 조금 더 낱장 형태의 치부 기록일 때 책(冊)이 접미사로 붙은 듯하다. 사지의 경우 사지치부책과 사지안으로 구분되었다. 이로 미루어 책(冊)을 정리한 형태가 안(案)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중기에 기록된 사출책과 사지안의 제명 가장 앞쪽에는 간지가 붙어 있는 것으로 보아, 1년 주기로 작성하는 것이 일반적인 사출 등록의 방식으로 여겨진다. 다만, 17세기 안음현에 보관된 사출책과 사지안의 작성 주기에 대해서는 명확히 알려지지 않았다. 『도중기』의 기록에 따르면 현자(玄字) 지통 안에 사출책과 사지안이 많이 남아 있었다. 각각의 간지를 기준으로 계산해보면, 짧게는 4년 뒤에 만들어진 경우도 있었으나 길게는 32년 뒤에 사출책과 사지안이 만들어진 경우도 있었다. 분석할 수 있는 자료가 한정적이므로 단정하기 어려우나, 17세기 안음현에서 사출책과 사지안 같은 사급 관련 등록류가 영구적으로 보관되는 문서가 아니었을 가능성이 크다.

『도중기』에는 특이하게 사급 관련 등록류가 아닌 사급입안 1건이 보관되고 있었다. 황자(黃字) 지통에 보관 중이던 오진현(吳震賢)의 노비 사출입안 1도가 그것이다. 그러나 단 한 건의 사례에 그친 것으로 보아, 사급입안은 원본 채로 관에 보관하기보다 등록류의 형태로 보관되는 것이 일반적이었을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사급 관련 등록류의 내용은 현재 확인이 불가능하다. 다만, 이런 등록류가 관에 보관되고 있었다면, 무안현 소송에서 피고의 주장처럼 배탈사급 또는 사급의 기록을 후대에도 확인할 수 있는 장치로 작용했을 것이다. 이와 같은 연장선에서 앞서 살펴본 1721년 노 자룡이 남양관에 입지를 요청한 이유를 이해할 수 있다. 당시 남양관도 안음현과 같이 사출책과 사지안이 존재했기 때문일 것이다.

54 남권희, 「慶尙道 安陰縣의 『丁卯十一月日 各項都重記』 분석: 地方 官衙의 記錄物을 중심으로」, 『영남학』 21, 영남문화연구원, 2012, 220쪽.

4. 맺음말

조선시대 소송에서 “문기”는 송관의 결정적인 판결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중요한 역할을 했다. 특히, 결송입안과 사급입안과 같이 관에서 발급해주는 입안(立案)은 공증력이 높은 문서로 인식되어 일반 백문과 다르게 취급되었다. 당시 사람들 또한 이러한 입안 자체의 위상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으나, 입안의 발급 과정에 대해서는 때때로 위조를 의심하기도 했다. 본 연구는 조선시대 사람들이 인식한 노비 매매에서 입안을 발급받은 이후, 관에서 어떤 행정적인 조치를 취했는지를 살펴보고자 1682년 무안현에서 발급된 결송입안을 중심으로 분석했다.

이 소송은 손홍립의 중복방매에서 비롯되었다. 그러나 갈등이 시작된 시점은 매득이 이루어진지 24년이 지난 후, 매득자들이 모두 사망한 뒤였다. 원고와 피고 모두에게는 손홍립에게서 매득한 비 끝문에 대한 매매명문뿐 아니라 관의 사급입안까지 있었다. 피고 전복립과 순립은 처음에 손홍립이 김상현의 조부에게 계쟁비를 판 적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들은 김상현의 조부가 세력 있는 무인으로 손홍립의 도망노비 22구를 찾아 준다는 조건으로 매득하는 모양으로 매매명문을 받았다고 했다. 그 후, 이것을 가지고 서리와 모의하여 거짓되게 사급입안을 발급받았다고 주장했다. 그 근거로 원고 측에게 사급입안을 발급해 준 관에 관련 등록 기록이 없고, 손홍립 집안에서 보유한 본문기에도 배탈이 되어 있지 않았다는 점을 들었다.

이에 대해 원고 측은 자신의 조부가 아닌 아버지가 매득했으며, 매득 이후에 계쟁비가 도망갔고 아버지는 사망했지만 자신은 나이가 어려 추심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관에 등록 치부가 없는 것은 심기원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심기원은 인조반정을 성공한 공신으로 잠시 나주에 유배를 온 적이 있었다. 이때 자신의 아버지가 매득한 비 중 득례의 죽인들이 심기원에게 의탁해 심기원이 비 득례

를 강탈했다고 한다. 그때 심기원이 관의 등록에서 득례와 관련된 부분을 삭제해 갔는데, 그 결과 득례와 같은 항에 있었던 비 끝문도 포함되어 삭제됨으로써 현재 관의 등록에 끝문에 대한 내용이 없다고 했다. 무안현에서는 원고가 제출한 1649년의 입지에 근거하여 최종 판결을 내렸는데, 실제 관의 등록을 고찰해본 결과 상하 단락에 인적이 달라서 원고의 주장대로 심기원이 기록을 할거한 것이 맞다고 판단했다.

이처럼 조선시대에는 개인 간에 노비 매매에서 사급입안을 발급받으면, 이를 발급한 관에서 해당 사항에 대한 치부 기록을 작성하여 보관했다. 또한, 관에서는 분재된 노비의 매매 시 본문기에 있는 효주와 배탈을 중시했다. 관의 입안을 받았다고 해도 효주와 배탈의 흔적이 없으면, 해당 문서는 격례에 어긋난 것으로 간주되었다. 특히, 입안이 분쟁에서 공증력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사급에 관한 기록이 관에 등록으로 보관되었기 때문이었다. 현재 관에서 보관된 사급 관련 등록의 현전 자료는 없으나, 중기를 통해 관에서 보관된 사급 관련 등록이 확인된다.

참고문헌

1. 기본 자료

- 『목민심서(牧民心書)』
『무명자집(無名子集)』
「무안현 결송입안」
『선무원종공신록권』
『승정원일기』
『약재집(約齋集)』
한국정신문화연구원, 『고전자료총서 82 - 2 광산김씨 오천고문서』
「홍패(紅牌)」

2. 단행본 및 논문

- 국사편찬위원회 편, 『한국고문서입문』 2, 민속원, 2021.
권이선, 「고문헌에 나타나는 자[上]의 용례와 문서 보관제도」, 『민족문화연구』 83,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원, 2019.
남권희, 「慶尙道 安陰縣의 『丁卯十一月日 各項都重記』 분석: 地方 官衙의 記錄物을 중심으로」, 『영남학』 21호, 영남문화연구원, 2012.
문숙자, 「16~18세기 분재문기에 수록된 배탈사급입안의 내용과 성격」, 『고문서연구』 52, 한국고문서학회, 2018.
심희기 등 역, 『조선시대 결송입안 집성』, 민속원, 2022.
채현경, 「조선후기 토지매매의 구문기 양도방식에 대한 사례연구」, 『고문서연구』 38, 한국고문서학회, 2011.
최연숙, 『조선시대 입안에 관한 연구』, 한국학중앙연구원 박사학위논문, 2005.

Abstract

The Case of Double Issuance of Gwan-sa(官斜) Documents in the Joseon and Its Causes

Focusing on the 1682 Gyeol'song Ib'an(決訟立案) of the Muanhyun Case

Kwon, E-Sun | The Academy of Korean Studies

In the Joseon Dynasty, documents issued by government offices, known as "Ib'an" (立案), were recognized as highly authoritative and carried significant legal weight, unlike regular documents (Baegmun, 白文). Consequently, people generally did not dispute the status of the Ib'an itself. However, there were occasional suspicions of forgery concerning the process of issuing such documents, depending on the circumstances. This study aims to explore the process in which the Sageub Ib'an(斜給立案), issued by the government after the purchase of slaves, was suspected of being forged, the causes behind this suspicion, and the administrative actions taken by the authorities, using a lawsuit from 1682 in Muan-hyeon as a case study.

In this lawsuit, both the plaintiff and the defendant possessed not only the bill of sale for the slave "Geutmun" purchased from the seller Son Heung-rip, but also a Sageub Ib'an issued by the government. Interestingly, two separate Sageub Ib'an documents had been issued for the same slave in the same region. The defendant argued that the Sageub Ib'an submitted by the plaintiff was forged, citing the absence of a corresponding entry in the government's registration records as evidence. Ultimately, the court in Muan-hyeon rendered its final judgment based on the 1649 Ip-ji(立旨) submitted by the plaintiff. Upon examining the government's records, the court found that the imprint(印跡) of individuals in the upper and lower sections of the document were different, thus confirming the plaintiff's claim that the record of Geutmun had been tampered with.

Thus, in the Joseon Dynasty, when slaves were bought and sold through government offices and a Sageub Ib'an was issued, the issuing government office would record and preserve the relevant details in its official registers. This system allowed for the verification of the authenticity of the Sageub Ib'an in case of disputes. While no physical records of these registrations currently exist, there is evidence from the Jung-gi(重記) that such records were indeed kept by government offices.

Keywords forgery of the Sageub Ib'an(斜給立案) documents, the deung-rok(騰錄) of the government office, Gyeol'song Ib'an(決訟立案) of the Muan-hyeon, Jung-gi(重記)